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271
----------	-----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13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김광성, 남진삼의원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4. 3. 26. ~ 2024. 4. 15.(20일간), 아래표 참조.
-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3. 12. ~ 2024. 3. 25.(14일간), 의견 없음.

조례안(의회안)	수정안	사유	의회 의견
없음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관행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 유지·강화 반영	<p>[일부수용]</p> <p>○ 안 제1조(목적)의 조문 일부 수정</p> <p>(기존안)</p> <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u>지역경제</u>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수정안)</p> <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u>지속가능한 농업</u>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스마트농업	스마트 농림업	산림도시 평창군의 임업농가의 수요 반영	<p>[원안유지]</p> <p>○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u>스마트농업</u>의 정의 존재.</p> <p>○ 안 제2조제1호 농업의 정의에 “임업”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p> <p>○ 안 제2조제4호 스마트팜 정의 중 작물재배 시설에 특용작물(버섯, 인삼 등) 포함가능.</p>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설치·운영·시설 지원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제1항 사업을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문자·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 조례안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온실 스마트팜, 광제어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

나. 추계 결과: 연간 세출예산 추계 아래 표 참조

연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 (천원)	비고
합계			746,408	국비 75,000 군비 644,908 도비 26,500
2024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일시사역 250명	19,720	군비 19,72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일반수용비, 스마트팜 대학운영 등	46,000	군비 46,000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8,000	군비 8,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207-03) : 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운영 실험연구비	10,000	군비 10,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	10,000	군비 10,000
2025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기간제 2명	56,422	군비 56,422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일반수용비, 스마트팜 대학운영 등	46,000	군비 46,000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10,000	군비 10,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207-03) : 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운영 실험연구비	30,000	국비 15,000 군비 15,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	30,000	국비 15,000 군비 15,000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스마트팜 운영 및 데이터 구축 장비 구입	53,000	도비 26,500 군비 26,500
2026~ 2028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기간제 2명 * 3년	169,266	군비 169,266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일반수용비, 스마트팜 대학운영 등 * 3년	138,000	군비 138,000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 3년	30,000	군비 30,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207-03) : 스마트팜 운영 실험연구비 * 3년	60,000	국비 30,000 군비 30,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 3년	30,000	국비 15,000 군비 15,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2024년 당초예산 편성)
- 도비(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 국비(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93,720	225,422	142,422	142,422	142,422	746,408
	인건비	19,720	56,422	56,422	56,422	56,422	245,408
	일반운영비	54,000	56,000	56,000	56,000	56,000	278,000
	연구개발비	10,000	3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시설비및부대비	10,000	30,000	10,000	10,000	10,000	70,000
	자산취득비		53,000				53,000
재원 조달		93,720	225,422	142,422	142,422	142,422	746,40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56,500	15,000	15,000	15,000	101,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93,720	168,922	127,422	127,422	127,422	644,90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